

벨기에의 ODA 현황

I. 대외원조법 제정 여부

- 벨기에에는 2003년까지 무상(grants)원조는 외교부(1999년 대외협력법에 근거)가, 유상(soft loans) 원조는 재무부(1997년 대외재정지원 행정명령 -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 결정)가 별도로 관장해 오다, 2003년 대외재정지원 행정명령을 개정, 유상원조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고 2004년 예산부터 유무상 원조를 외교부 예산으로 편입시켰음.
 - 유무상원조 예산의 통합은 예산상 단일화가 바람직스럽다는 예산처의 권고를 외교부와 재무부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음.
 - 유상원조는 상기 1999년 대외협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외재정지원 조례 외에 근거가 되는 상위 법규는 없음.

II. 대외원조 시행 기관

- 외교부 산하의 벨기에 기술협력청(Belgian Technical Cooperation)에서 유·무상 양자 지원을 전담하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적 원조는 외교부 및 해당 부처에서 담당함.

III.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

- 원조의 대부분은 무상원조 형태이며 유상원조는 극히 일부분임.
 - 2004년 총액 기준 무상원조 98%, 유상원조 2%

IV. 해외긴급재난 발생시 자국민 및 피해국에 대한 지원체제와 관련한 법령 유무

□ 벨기에 자국민에 대한 재난관련 지원은 영사국에서 담당하며 대외 원조와는 별도 체제로 구성

□ 긴급재난 지원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1단계:외교부 별도 예산으로 연간 1백만 유로를 긴급구호기금으로 마련, 수상실의 주도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1차 구호품(식품, 의약품, 임시 거주 용구 등) 구입 및 수송(벨기에 Red Cross 가 주관)

-2단계:1996년 대외 긴급구호 및 재건지원 행정 명령에 의해 연간 22백만 유로의 긴급 구호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중 10백만유로는 UN CAP (Consolidated Appeal Process)에, 12백만 유로는 벨기에 NGO를 통한 지원에 투입(상기 1항의 1999년 대외협력법상의 무상원조와는 별도 체제로 운영)

[자료:주벨기에 대사관]